

달러유니버설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4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3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제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8조 보험료의 납입
-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10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제11조 해약환급금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12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달리유니버설특약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주계약 보험료 이외 보험료의 추가 납입 및 적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US \$100, 연간 10%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 년차 이자 = US \$100(원금) X 10%= US \$10

• 2 년차 이자 = (US \$100(원금) + US \$10(1 년차 이자)) X 10%= US \$11

→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US \$10+ US \$11= US \$21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참고】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 홈페이지(www.kb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습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로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라.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로부터 일 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기타 계약 관련 내용
- 가. 추가납입보험료: 이 특약의 성립 후 보험기간 내에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1) 해당월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입니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합니다.

【예시】

해당월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 600 달러, 해당월까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총액 300 달러,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액이 100 달러인 경우
 → 해당월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600 \text{ 달러} \times 100\% - 300 \text{ 달러} + 100 \text{ 달러} = 400 \text{ 달러}$

-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미(美)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美)국고채수익률은 미(美)재무부(U.S.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공시하는 10 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 5 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 년이상은 연복리 0.50%를 적용합니다.
- 다. 추가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을 「보험업감독규정」 제 5-6 조 제 1 항 제 7 호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외화보험계약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주계약이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단, 주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액완납보험】

감액완납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동일한 보험기간의 일시납 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연장정기보험】

연장정기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당초 주계약의 보험금액과 동일한 일시납 정기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 ④ 제 3 항 제 2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11 조 [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 3 항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서류 중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⑥ 제 5 항에 따라 청구가 있었을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당시의 추가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추가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계약자적립액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 ②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및 추가계약자적립액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추가계약자적립액의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회사는 제 11 조 [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감액직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와 감액 이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직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직전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제 3 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성립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일 또는 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추가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US \$100 이상 US \$10 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전부를 인출 신청한 경우에는 단위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2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제 1 항에 따라 추가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③ 추가계약자적립액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 년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 5 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 년이상은 연복리 0.50%를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이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보험가입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 5 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 년이상은 연복리 0.50%)로 적립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8조 [보험료의 납입]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특약 성립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해당월까지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1 조 [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0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때 계약해지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 4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31 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 4 항을 말합니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11 조 [해약환급금] 제 3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지시 추가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제 10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등

제12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4조 제6항 및 제11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추가계약자적립액 (제 4 조 제 5 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 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 11 조 제 1 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주계약 약관 참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주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란】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주 4)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 홈페이지(www.kb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